# 「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7월 15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7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7월 24일

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방 주 문

## 나. 제안이유

○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・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○ 3개 통 증설에 따른 통장 3명 증원(안 별표)

•당초 : 704개 통 · 리장(통장 493, 리장 211)

•변경: 707개 통·리장(통장 496, 리장 211)

O 조정내역

읍면동	현행 정원	조정 정원	증감사항
양포동	56	59	증3

## 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O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O 기 타 : 통리반 증감에 따른 「구마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

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- O 본 개정조례안은
  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의 후속 조치로 양포동의 3개 통 증설에 따른 통장 3명의 증원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,

## O 검토 결과,

- 시민들의 혼란 여지를 없애고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 론 요 지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